

의안
번호

43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경이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433호

다. 제출일자 : 2025. 2. 28.

라. 회부일자 : 2025. 3. 13.

2. 제안이유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심야시간(22시~익일1시)에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사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1조의 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의미하며 서울시 전체 38개소, 성북구는 2개소를 운영중임

<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25. 1월 현재) >

연번	약국명	소재지	운영형태	운영시간
1	모아약국	성북구 화랑로11길 23, 1층(하월곡동)	매주 월 수, 금 운영	22시~ 익일1시
2	온누리민우약국	성북구 돌곶이로22길 49(석관동)	365일 운영	

※ 서울시 전체 38개소 운영 (성북 포함 13개구× 2개소, 12개구, × 1개소)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성북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나.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등 구매의 편의 제공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함.

다. 안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라. 안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 운영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마.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안 제7조(지원금의 환수)

-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안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안 제9조(홍보)

-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업무 수행시 근무일, 운영시간 준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운영이 되도록 홍보 규정을 둠.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약사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등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23.4.18. 신설]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제2항[24.7.12. 신설]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3,5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